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정호·김성환·박희승

김남희 · 신영대 · 허종식

정성호 · 정진욱 · 박해철

어기구 · 강유정 · 이연희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,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없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 생하였고,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제5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의장의 의견제시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) ① 의장은 국회운 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(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 외한다)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-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의안으로 제출할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1조의2(의장의 의견제시에 대
	한 위원회의 제안) ① 의장은
	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
	는 사항(제37조제1항제1호사목
	및 아목은 제외한다)에 관하여
	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
	따라 제시된 의견을 의안으로
	제출할 수 있다.
	③ 제2항의 의안은 국회운영위
	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